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복기왕의원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87
----------	-------

발의연월일 : 2026. 1. 20.

발 의 자 : 복기왕 · 권영진 · 이성권
김상훈 · 이견태 · 최혁진
허종식 · 김승원 · 박선원
문진석 · 서영석 · 송기현
이수진 · 김태년 · 추미애
민병덕 · 한민수 · 박 정
노종면 · 손명수 · 이훈기
김석기 · 우재준 · 윤영석
강명구 · 윤종균 · 김종양
김희정 · 신정훈 · 이연희
이강일 · 배준영 · 민홍철
이학영 · 김 현 · 한정애
안도걸 의원(37인)

제안이유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 개발을 기대하던 원도심 주민들은 오히려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원도심이란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중 인구·사업체의 정체 또는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정의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안 제6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음.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마.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 설치(안 제10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를 둠.

바. 사업시행자(안 제13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음.

사.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아.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자. 국가유산 또는 지역 정체성 보전 구역에 대한 지원 등(안 제18조)

원도심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 또는 지역 정체성의 유지·관리 및 발전이 필요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구역의 경우 해당 구역의 유지, 관리 및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차. 보조 또는 융자(안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교육 및 보육 등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원활히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기반 지원, 보육기반 확충, 노후·유희시설의 정비 및 활용 등을 할 수 있음.

타. 영향평가 통합심의(안 제25조)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교육,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음.

파. 원도심정비지원기구 및 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안 제32조 및 제3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원도심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 지원, 시행 및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지원하는 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 노후화, 광역교통망 구축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 원도심의 기능을 향상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주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이란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중 인구·사업체의 정체가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한다.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이란 원도심 안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경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등이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이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5. “토지등소유자”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등의 규제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원도심 정비 및 지원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구역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 협의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 등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의 요건)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지역산업의 쇠퇴, 경제활동인구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3. 원도심 지역의 비효율적 토지 이용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공간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4. 원도심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또는 원도심 지역 정체성의 유지·관리 및 발전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공간적 범위
3.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4.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5.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단계적 추진계획
6.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8. 주민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9.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10.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11. 도시재생 및 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12.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제시된 의견이 제10조에 따른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방법 및 고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지정 목적과 시행 기간
3.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
4.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5.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6.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시행계획
7.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단계적 추진계획
8.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10.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 대책
11.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 대책
12. 도시재생 및 개선 추진 대책
13.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초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초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협의회) ①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원도심정비지원협의체 설립)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도심정비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원도심정비지원협의체는 해당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사업 시행자, 입주기업, 토지등소유자,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원도심정비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 등소유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조세·공공기여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평가 등 통합심의와 관련한 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

④ 원도심정비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해제)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 해제의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 ①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②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도심을 관할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5. 신탁업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체적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3.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업무·상업에 대한 복합개발 등을 허용하고 구체적인 시설 비율은 원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

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사업시행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6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련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국가유산 또는 지역 정체성 보전 구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시

·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도심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또는 지역 정체성의 유지·관리 및 발전이 필요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구역의 경우 해당 구역의 유지, 관리 및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4. 광역교통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제31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이주단지 조성 비용
 - 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임차료, 관리비 및 주거이전 비용
 - 다. 상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상가의 건설비 및 이전 비용

6. 제32조에 따른 원도심정비지원기구 및 제33조에 따른 지방원도심 정비지원기구의 운영비
 7. 원도심의 노후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8. 원도심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9.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0.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11. 원도심 정비 및 지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 ④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용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상생협약) ①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9.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12. 그 밖에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6 및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을 경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교육기반의 지원) ①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

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3. 해당 지역의 현안

제23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서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통합심의)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 심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
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
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
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
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해당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속한 지
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0.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6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인가 내용
3. 그 밖에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나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사업시행자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③ 국가는 이주민의 주거와 경제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또는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주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30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위한 사업

을 시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주대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확보한 공공주택을 활용하여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도시 또는 인근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입주자·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은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이주단지 또는 순환용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원도심정비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도심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원도심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도심 정비 및 지원 관련 시책의 발굴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대한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5.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원도심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업무 지원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 지원
3.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4. 이주대책 수립 관련 업무 지원

5.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6. 그 밖에 수립권자가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공공기관등의 원도심 우선 입지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소속 기관의 청사 또는 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을 신설·증축·이전 또는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입지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안에 공공기관등이 입지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명백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밖의 지역을 입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밖의 지역을 입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밖의 지역을 입지로 정하는 경우 공공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주민 접근성, 교통, 환경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4.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안의 입지를 배제한 구체적 사유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서를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안에 입지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부지의 제공 및 활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건축비 지원 등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제1항을 위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 대하여는 지원에 제한 또는 개선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입지 결정 현황 및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